

# 투자신탁 약관변경 및 해지 공고

## 1. 투자신탁의 약관변경

- ① 대상투자신탁 : BESTGUARD중기채권투자신탁1호, BESTCHOICE비과세추가형국공채투자신탁CH-1호, BEST비과세고수익고위험혼합투자신탁제(CH-2)호, SBEST비과세고수익고위험혼합투자신탁제(CH-1)호, 신한특별장기공사채투자신탁제L-6호, BEST신종MMFC-2호, BEST신종MMFC-3호, G2한바구니CH장기공사채투자신탁(C-4)호, G5한바구니CH장기공사채투자신탁(C-6)호, BEST(안정)장기증권투자신탁 <총 10건>
- ② 약관변경일 : 2011년 6월 29일
- ③ 변경내용

관련조항	변경전	변경후
제26조 제(1) /②)항	<중략> 투자신탁의 일부해지에 따라 수익권의 총좌수가 (50억/100억)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(금감위/재정경제원장관)에 신고하고 이 투자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	<중략>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월간 계속하여 100억원에 미달하거나 신탁재산 전부에 대해 환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감위 승인 없이 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제26조 제(2) /③/④)항	(제1항또는제2항/제1항)의 규정에 의하여 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때는 (판매회사/ 판매회사 또는 위탁회사는)는 <중략>	(제1항또는제2항/제1항)의 규정에 의하여 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때는 위탁회사는 <중략>

\*괄호안 내용은 개별 투자신탁마다 상이하므로 개별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을 참조

## 2. 소규모 투자신탁의 해지

- ① 해지사유(근거법) 및 대상 투자신탁
  - 『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 제1항 단서조항』 : 1. 투자신탁 약관변경 대상 투자신탁과 동일 <총 10건>
  - 『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05조 제1항 단서조항』 : 신한BNPPTopsTurnAround종류형채권투자신탁제1호, 신한BNPPTops법인용채권투자신탁1호, 신한인컴플러스장기채권투자신탁제1호, 신한BNPP이머징마켓채권채권간접투자신탁제1호, 신한BNPP포트폴리오플러스단기주식투자신탁제1호 <총5건>
  - 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단서조항』 : 신한BNPPTops법인용인덱스30증권투자신탁제1호[채권혼합], 신한BNPP밸류플러스증권투자신탁제1호[채권], 신한BNPPTops법인용증권투자신탁제1호[채권], 신한BNPPTops씨리얼직립식배당증권투자신탁제1호[주식혼합], 신한BNPP법인용프레스티지안정형증권투자신탁제1호[채권혼합], 신한BNPP프레스티지가치주안정형증권투자신탁제1호[채권혼합], 신한BNPPBEST신종개인용단기금융투자신탁제4호[국공채], 신한BNPP민음직한증권자투자신탁[채권], 신한BNPPBEST신종법인용단기금융투자신탁제8호[국공채], 신한BNPPBEST신종개인용단기금융투자신탁HN-7호[국공채] <총10건>
- ② 투자신탁 해지일자 및 상환금 지급방법
 

2011년 7월 29일 투자신탁 해지 후 당일 공시되는 상환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상환대금이 해당 판매사를 통해 지급됨

  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또는 해당 판매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